

#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의 이중배상 금지에 대하여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재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상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상 요양신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법 제750조에 의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즉, 여기에 이중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된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사용자가 그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회보험인 산재법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의 요양과 손실보전 등 생활 보장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 민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산재법상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 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때에 당해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라 할 수 있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둘은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요건이나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무과실 책임주의지만 후자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정액보상제도인 반면 실손해액의 전보라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하나의 재해가 근기법에 의하든 산재법에 의하든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즉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근기법상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피재근로자가 요양치료 종결 이후 사업주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산재법에 의하여 지급 받았던 가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때 현행 자동차보험법상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게 될 것이다.

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우선 처리할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명심 해야 할 것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 표를 작성·제출하거나 산재법에 의한 최초요양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산재발생 신고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이중배상과 관련해서 국민연금법 제93조에서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 피재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또는 화재보험 등에 의한 급여는 이미 본인이 낸 보험료에 의한 제 급여이므로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문제는 없다. 그러므로 이중배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